

출석인정(일반공결) 처리 방법 안내

2021. 8. / 학사지원실

1.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(학칙시행세칙 제16조)

순	출석인정사유	구분	신청 자격	신청기한	신청학생 제출서류	비 고
1	교육과정운영	현장전학(실습)	학과의 현장전학 또는 현장실습 참여	결석일 전 1주일 이내	제출서류 없음	주관학과의 내부결재공문 첨부
		국고사업의 공식행사	사업단에서 주최한 행사 참여	〃	제출서류 없음	
2	학교대표로 대회 참가		학생 운동선수에 해당 학교대표: 학교 운동선수 또는 총장 결재를 받은 학교 대표	〃	제출서류 없음	학과에서 공모전 또는 대회에 출전한다고 학교대표가 아님
3	법령에 의한 의무이행		예비군 훈련 참여, 군입대 시험 응시 등	결석사유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	- 예비군 훈련 확인증 - 군입대 시험 응시 확인증 등	재판으로 인한 법원출석은 미해당
4	본인의 상해나 질병		병원 입원	〃	입퇴원확인서	입원에 한하여 인정
5	법정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 조치가 필요한 경우		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(진단검사 결과 대기자 포함)	〃	입원치료통지서 또는 공공기관 발급 유증상자 및 자가격리자 증명서류	진단검사자의 경우 보건소 통보 문자로 증빙 가능
			코로나19 백신 접종자 - 접종 당일 1일 - 접종 다음날 이상 증상 시 추가 1일 - 접종 2일 후 증상 지속시 치료 기간	〃	- 접종 당일: 백신접종 확인서 - 접종 다음날 이상 증상: 증빙서류 불필요 - 접종 다음날 후에도 증상 지속 시 진단서 제출 * 백신 종류에 따라 2회 접종이 시행되는 경우 회차별 동일 기준 적용	
6	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사망		- (외)조부모, 부모, 배우자, 자녀 사망(공휴일 포함 5일 이내) - 형제자매 사망(공휴일 포함 3일 이내)	〃	사망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	가족관계증명서 없을 시 무효

순	출석인정사유	구분	신청 자격	신청기한	신청학생 제출서류	비 고
7	생리로 인한 공결(보건공결)	여학생		결석사유 종료일 다음 날부터 7일 이내	제출서류 없음	
8	학생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	학생 본인의 결혼(공휴일 포함 5일)		결석일 전 1주일 이내	청첩장	

○ 신청 안내 및 접수 시 유의 사항

- 출석인정 기간: 모든 사유를 합하여 출석인정 기간은 수업일수의 1/3 이내만 가능함

(예) 주 1회 수업(15회수업)의 경우 보건공결 2회 사용 후 현장실습으로 4회 공결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

→ 수업일수 1/3이내(총5회)까지만 가능

- 코로나19 관련 공결 신청: ‘법정전염병’ 관련 항목을 선택하고 입력, 사유종료일(자가격리일) 다음날부터 입력 가능함(사전 입력 불가)
- 출석인정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즉시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알려야 함
- 원격강좌 및 야간수업은 출석인정 대상 과목이 아니므로 학생이 수강하여야 함(공결처리 되지 않음)
- 출석인정은 수업의 출석에 관한 사항을 인정하는 것이며, 성적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수의 평가기준을 적용받는 것이므로 성적평가에 관한 사항은 담당교수의 기준에 따라야 함.

○ 학생 신청 화면 : 인스타(<https://instar.jj.ac.kr/>) → 학사관리 → 출석인정신청 → 출석인정(일반)